# 판매점 계약서

심패스(SIMPASS) (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모집,유지 및 기타 상품 판매 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대하여 "을"이 가입자를 모집, 유지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상호의 신뢰를 기초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계 규정의 준수】

-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제반 법규 및 "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처리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2. "을"은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의 경영방침 및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 4. "을"은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갑"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신청서, 신분증 등)를 "갑"의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고객정보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을"의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는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라. "갑"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을"의 시스템, 영업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점 업무의 범위]

- 1.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에 위탁한다.
- 가.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 나.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서비스 업무의 대행
- 2. "갑"은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을"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3. "을"은 "갑"의 사전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본 조 제1항 및 제2항 업무 외의 "갑"의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 제4조[판매점 준수 의무]

-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필요 시 개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만사항 및 민원 등에 대해서는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사"가 선처리 할 수 있다.
- 3. "을"은 가입자 개통 시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본인 확인 미비 등으로 가입한 회선이 명의도용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용도로 전환되어 "갑"에 물적, 법적 책임이제기될 경우에는 "을"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 4. 을"은 매장에 방문한 고객과 신분증 상 고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를 진행하거나실제 개통하는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탁업무를 진행 할 경우 이로 발생한 "회사"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모든 법적, 물적 책임을 가지므로 반드시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신규계약신청서, 변경신청서 등 가입자가 작성한 서류는 "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정보 보호】

- 1. "을"은 "갑"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가입자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등 가입자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을"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하여 "관리방안"의 고객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해당직원의 고객정보 침해 행위로 인하여 "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을"은 "갑"의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판매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 4. "을"은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한 관리·감독 및 배상 책임을 부담

한다.

- 5. "을"은 본 조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는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6.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갑"이 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일체의 가입자정보를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 7. "을"은 제1항에서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회사에게 민·형사상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갑"의 면책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및 인센티브】

- 1. "갑"은 "을"의 "계약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세부 내용은 별도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의한다.
- 2. 인센티브라 함은 "갑"은 "을"의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그 월별 업업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을"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정책성 수수료를 말한다. 인센티브는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 3. "갑"의 월별 영업정책은 해당 월(月)에 한하여 유효하며, "갑"의 인센티브 관련 월별 영업정책을 통지하지 않는 월(月)에는 "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지급 되는 수수료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급을 보류함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갑"은 계약기간 중에라도 "을"이 신규 유치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갑"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미상 등으로 "갑"의 응신 요구에 답변이 없거나, 세금계산서를 인도 승인하지 않을 경우
- 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갑"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갑"이 "을"에게 위반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통지한 경우
- 다. "을"이 "갑"에게 정한 담보를 미제공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 혹은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5.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지급 되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갑"은 내부적 또는 외부적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갑"은 시장여건,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변경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갑"은 "을"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다. 정보통신부의 정책 변화 등 외적 경영환경이 "갑"과 "을"의 계약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갑"은 "을"과 상호 협의 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6. "갑"은 "을"이 신규유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3개월이 도과한 날로부터 "을"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6개월이 도과하면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계약 해지시, 지급 보류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7. "을"은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포함)으로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잘못 지급한 경우는 현금으로 반환 받거나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차감한다.
- 8.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중에 어느 일방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기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까지 이미 발생된 수수료만을 지급하기로 하며, "을"은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9. 수수료의 지급기간은 본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호간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갑"의 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통지 의무】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 변경 시에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소재지, 사업자
- 3. 대표자 및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
- 4. 영업내용 및 서비스 시설 등 영업과 관련된 사항

#### 제9조【계약의 해지】

-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을" 또는 "을"의 실경영자가 은행거래를 정지 당한 때
- 나. "을"이 파산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개시 결정, 워크아웃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다. "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받은 때

- 라. "을"이 "회사"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수료 또는 장려금을 부당하게 증액 시키거나, 기타 "갑"에 납입해야 할 수납금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 마. "을"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나 형사상 소추를 당하여 "갑"과의 계속적 신 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 바. "을"이 제2항의 위탁업무 정지 또는 계약해지의 최고를 받고 "회사"의 시정요구를 이행한 후, 다시 동일 또는 유사항 행위를 한 경우
- 사. 1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가입자 유치가 없는 경우
- 2.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 대하여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제3조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정지 하거나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최고한 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가. "을"이 위탁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한 경우
- 나. "을"이 가입자에게 가한 손해로 인하여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때
- 다. "을"이 "갑"와 거래관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한 때
- 라. "을"이 "갑"에 가입된 가입자를 경쟁사업자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마.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휴업하거나 사실상 휴업상태인 경우
- 바. "을"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갑"의 다른 대리점 포함)와 함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갑"의 사업을 제한, 방해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상호간의 계속적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 사. "을"이 제4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갑"은 제2항의 최고기간 중에는 가입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온라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4. 가입자의 불만사항이 "을"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인해 "갑"이나 기타 이동통신 사업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또는 정부민원기관 등 정부 및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서면 경고 혹은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갑"은 일정한 룰에 의해 패널티를 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도 "을"(하위 판매점등을 포함)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정부 및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서면경고 혹은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조치가 완전히 해결(원인의 해소 및 사후 처리 등)될 때까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영업정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6. 계약기간 만료, 기타 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가입자의 관련제반 자료 및 본 계약을 근거로 대여된 물품을 반환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미 정산된 계산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7. "을"이 제6항의 사항을 1일 이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지급일까지 경과된

채무잔액에 대하여 "갑"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의 기간 및 효력】

1. 본 계약은 양측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 및 종료 통지가 없는 한 본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2. 본 계약서 발효일 이전에 "갑"과 "을"간에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체결된 구두, 서면의 합의, 계약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반하거나 다를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 제11조【분쟁 해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본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 20 년 월 일

상 호 : 심패스(SIMPASS) 상 호 :

주 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주 소 :

우림이비지센터 1차 1210호

대표자 : 김 익 태 (原美) 대표자 :